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반야노인요양원 운영규정 중 ‘거주어르신 운영규정 제3장’ 일부 내용 발췌]

제16조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7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장기요양인정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된 유효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 (입소·이용료 납부)

1. 수급자의 입소 당월 및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익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시설계좌로 송금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고시되었을 경우
2. 수급자의 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가.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될 시 시행 절차

수가 및 비용 변경내역 확인 → 보호자(입소자)에게 변경내역 안내 → 급여제공계약서 확인 및 계약→시행

나. 비급여 항목의 금액 변경과 추가 항목이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변경에 대한 안전을 회의를 통해 변경한다. 변경된 부분은 시설 내부에 게시하여 방문인과 수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에게는 우편발송을 한다.

제20조 (계약자 의무) 수급자와 시설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나.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다.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라.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시설의 의무

가.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나.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수급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마.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제21조 (계약 해지 요건)

1. 수급자의 해지

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의 해지

- 가.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다.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퇴소)

1. 시설은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와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게 제출하고 시설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또는 수급자)에게 통보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시설은 수급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급자가 지정한(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입소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반야노인요양원 운영규정 중 ‘거주어르신 운영규정 제2장’ 일부 내용 발췌]

제5조 (제공서비스) 시설은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목욕도움, 식사도움 등)
2. 기능회복훈련서비스(신체기능,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3. 간호 및 처치(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영양간호, 배설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4. 치매관리지원(배회, 폭력행위, 격리, 강박 등 그 밖에 문제행동 대처)
5. 응급서비스(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6. 기타(외출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등)

제6조 (특별보호서비스 기준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 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수 질병 또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특별침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며,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및 가족으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규정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해야 한다.

6.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에 수급자 및 보호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9. 수급자의 신원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 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10. 수급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하며, 신원인수인이 시신을 인수를 거부하거나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이 장례를 화장으로 시행하며 그 비용은 추후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1. 시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보호자 등의 가족이 간병 등 일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시설은 필요에 따라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원상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반야노인요양원 거주어르신 운영규정 별지1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2025년 기준]

1. 시설급여 (1일)/ 요양보호사 2.1:1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 급여	노인요양시설	90,450원	83,910원	79,240원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월 50,000원		
	식재료비(1식)	1식 3,500원(1일 10,500원)		
	간식비(1회)	800원		
	이/미용료등	-		

(기타사항) 4~5등급(치매 등급)은 3등급 수가 준용

- ※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인상될 수 있음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세부내역(1등급/일반/상급침실/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3,102,5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170,800	
	요양급여비용(80%)	2,170,800	공단부담금
개인 부담비용	소 계	931,700	
	요양급여비용(20%)	542,700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간식비	339,000	1일 3식(간식비 포함)
	상급침실 이용료	50,000	상급침실 이용시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가. 기본원칙

-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나.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 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3) 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